

국토교통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8786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에 따라 철도관제자격증명을 이원화하여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운전면허시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교육훈련을 필기시험 합격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운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 제38조의10제1항5호 국가기술의 자격증 사본을 삭제하고 제38조의10제1항6호에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의 사본을 신설
- 다. 관제자격증명 소지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과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기준 마련(별표 7, 별표 10)
- 라. 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과 학과목 및 합격기준 마련(별표 11의2, 별표 11의4)
- 마. 관제자격증명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응시원서,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별지서식 개정(별지 24호의 5, 7 내지 8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전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기능시험 응시전에는 교육훈련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의 사본(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소지자가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소지자가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4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4의7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4의8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운전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u>	3. <u>운전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기능시험 응시전에는 교육훈련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3의2. ~ 5. (생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 ----- ----- ----- -----.

1. ~ 4. (생략) 5.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자격증 사본(제38조의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의 사본(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소지자가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소지자가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3. 1. 19.>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

(제20조제3항 관련)

1. 일반응시자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가. 디젤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 철도시스템 일반(6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7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340시간	470시간
나. 제1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 철도시스템 일반(6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7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340시간	470시간
다.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680)	• 철도관련법(50)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5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1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270시간	410시간
라. 철도장비 운전면허 (340)	• 철도관련법(50) • 철도시스템 일반(4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70시간	170시간
마. 노면전차 운전면허 (440)	• 철도관련법(5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4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8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24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운전면허 소지자, 관제자격증명 보유자

() : 시간

소지면허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가. 디젤차량운전면허·제1종전기차량 운전면허·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420)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15) - 고속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85)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10) -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40시간	280시간
나. 디젤차량운전면허	1)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85)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50시간	35시간
	2)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85)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50시간	35시간
	3) 노면전차 운전면허(6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2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40시간	20시간
다.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1) 디젤차량운전면허(85)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50시간	35시간
	2) 제2종 전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현장실습교육

	기 차량운전 면허 (85)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50시간	35시간
	3) 노면전차 운전면허 (5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1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30시간	20시간
라.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1) 디젤차량 운전면허 (130)	• 철도시스템 일반(1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4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60시간	70시간
	2) 제1종 전 기 차량운전 면허 (130)	• 철도시스템 일반(1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4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60시간	70시간
	3) 노면전차 운전면허 (5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1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30시간	20시간
	1) 디젤차량 운전면허 (460)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30)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260시간
마. 철도장비 운전면허	2) 제1종 전 기 차량운전 면허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46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260시간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40)	• 철도관련법(30)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70시간	170시간
	4) 노면전차 운전면허 (220)	• 철도관련법(30)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20시간	100시간
	바. 노면전차 운전면허	1) 디젤차량 운전면허 (320)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3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20)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 철도관련법(30)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275)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비상시 조치 등
		170시간	105시간
	4) 철도장비 운전면허 (165)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2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20시간	45시간
사. 철도교통 관계 자격증명	1) 디젤차량 운전면허 (26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40시간	120시간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6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40시간	120시간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15)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10시간	105시간
	4) 철도장비 운전면허 (115)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70시간	45시간
	5)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아. 도시철도교통관계 자격증명	(170)	합) 등(10)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70시간	100시간
	1) 디젤차량 운전면허 (290)	• 철도시스템 일반(3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70시간	120시간
	2)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90)	• 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70시간	120시간
	3)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215)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10시간	105시간
	4) 철도장비 운전면허 (135)	• 철도시스템 일반(2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90시간	45시간
	5) 노면전차 운전면허 (17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70시간	10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 : 시간

경력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가. 철도차량 운전 업무 보조경력 1 년 이상(철도장비 의 경우 철도장 비운전 업무수행 경력 3년 이상)	디젤 또는 제1종 차량 운전면허 (290)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20) • 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 일반(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90시간	100시간
나. 철도차량 운전 업무 보조경력 1 년 이상 또는 전 동차 차장 경력 이 2년 이상	1) 제2종 전 기 차량운전 면허 (290)	• 철도관련법(30)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9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90시간	100시간
	2) 노면전차 운전면허 (140)	• 철도관련법(20)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1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80시간	60시간
다. 철도차량 운전 업무 보조경력 1 년 이상	철도장비 운 전면허 (100)	• 철도관련법(20) • 철도시스템 일반(1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80시간	20시간
라. 철도건설 및	철도장비 운	• 철도관련법(20)	• 현장실습교육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작업경력 1년 이상	전면허 (185)	• 철도시스템 일반(2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 (7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20시간	65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 : 시간

경력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1) 디젤 또는 제1종 차량 운전면허 (395)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30) • 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50) • 운전이론 일반(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250시간	145시간
	2)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40)	• 철도관련법(30)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100) • 운전이론 일반(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140시간
	3) 철도장비 운전면허 (215)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2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7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30시간	85시간

	4) 노면전차 운전면허 (215)	• 철도관련법(30)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7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30시간	85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버스 운전 경력자

() : 시간

경력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노면전차 운전면허 (250)	• 철도관련법(30)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7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 비상시 조치 등
		130시간	12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6. 일반사항

가.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법령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단,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디

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 수행경력이란 **운전업무종사자**로서 운전실에 탑승하여 전방 선로감시 및 운전관련 기기를 실제로 취급한 기간을 말한다.

라. 모의운행훈련은 전(全) 기능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마.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훈련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철도운전 관련 학과의 정규과목 이수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론교육의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3. 1. 19.>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가. 일반응시자·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버스 운전 경력자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비고

1.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버스 운전 경력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운전면허 소지자, **관제자격증명 보유자**

소지면허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1)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2)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제2종 전기차량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운전면허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5) 철도장비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6) 노면전차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 · 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 · 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7)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 · 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 기계 · 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8)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 · 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전기차량 운전면허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비고:

1.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관련 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나.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3.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개정 2023. 1. 19.>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제38조의2제2항 관련)

1.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관제자격증명 종류	관제교육훈련 과목	교육훈련시간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가.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나.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습 다.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라. 비상 시 조치 등	360시간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가. 열차운행계획 및 실습 나. 도시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습 다. 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 라. 비상 시 조치 등	280시간

2.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가. 법 제21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증명 교육훈련시간은 80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신체검사나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서 사본을 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1호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관제교육훈련 과목의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교과목의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제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1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또는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은 105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제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 10. 23.>

4.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 과목에는 노면전차 관제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개정 2023. 1. 19.>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38조의7제2항 관련)

1.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과목

관제자격증명 종류	학과시험	실기시험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가. 철도관련법 나. 관제관련규정 다. 철도시스템 일반 라. 철도교통 관제운영 마. 비상 시 조치 등	가. 열차운행계획 나.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다. 열차운행선 관리 라. 비상 시 조치 등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가. 철도관련법 나. 관제관련규정 다.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라. 도시철도교통 관제운영 마. 비상 시 조치 등	가. 열차운행계획 나.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다. 도시열차운행선 관리 라. 비상 시 조치 등

2. 학과시험의 일부 면제

가. 법 제21조의8제3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의 학과시험 과목 중 철도관련법 과목 및 철도 또는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과목을 면제한다.

나. 법 제21조의8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 과목 중 철도관련법 과목 및 관제관련규정 과목을 면제하고, 실기시험 과목 중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과목을 면제한다.

다. 법률 제1343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법 제22조제1항(법률 제1343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의 학과시험 과목 전부를 면제한다.

비고

1.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을 포함한다.

2. 관제관련규정은 철도차량운전규칙 또는 도시철도운전규칙,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등 철도교통 운전 및 관제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3. 관제자격증명시험의 평가과목에는 노면전차관제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한다.
4. 관제자격증명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과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관제관련 규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나.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개정 2023. 1. 19.>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railsafety.or.kr/web/indexjsp)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본인은 년도 제 차 관제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하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거짓 또는 부실 기재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응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 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③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④ 소속 기관 * 해당자만 적습니다.							
	⑤ 국적							
⑥ 응시 분야	[]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⑦ 응시 과목	학과							
	실기							
⑧ 면제 사항	교육훈련		신체검사		적성검사		자격증명시험	
	[]		[]		[]		[]학과 []실기	
⑨ 보유 자격증	자격증 종류		철도차량운전면허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⑩ 교육 이수 사항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료증 번호	⑪ 응시번호	접수자		확인자
					⑫ 시험일시			
					⑬ 시험장소			(인) (인)
⑭ 신체 검사	검사병원	판정서 발급 번호	유효기간	⑮ 적성	검사기관	판정서 발급 번호	유효기간	
				검사				

자 르 는 선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					⑪ 응시번호	
					⑫ 시험일시	
					⑬ 시험장소	
①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사 진			
⑥ 응시 분야	[] 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 도시철도교통관제 자격증명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⑦ 응시 과목	학과					
	실기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 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 <개정 2023. 1. 19.>

[] 철도교통
[] 도시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소속 기관명	전화번호	
	*해당자만 적습니다.		
	주소		
(재)발급 사유	[]신규 []분실 []훼손 []기타		

「철도안전법」 제2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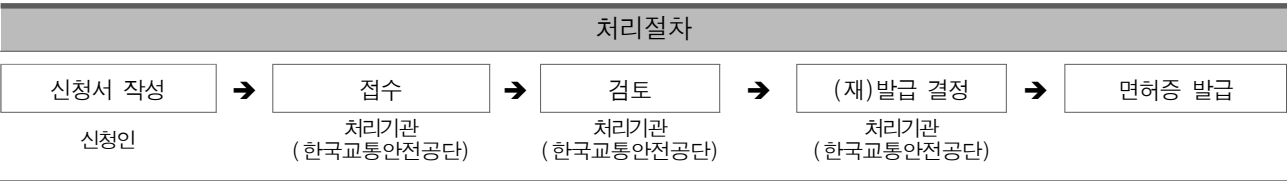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발급	1. 주민등록증 2. 사진 3.5cm × 4.5cm 1장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
	재발급	1.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분실(훼손)사유서(해당자만 적습니다) 3. 사진 3.5cm × 4.5cm 1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8서식] <개정 2023. 1. 19.>

(앞쪽)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 (Certification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2.5cm×3.0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종별	☐ 철도교통, ☐ 도시철도교통				
	자격번호					
	유효기간					
발급일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86mm×54mm[PVC(비닐) 980.4g/㎡]

(뒤쪽)

관제 실무수습 인증			
연월일	인증구간	인증기관	평가자
기록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확인인	
* *			